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4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주호영·고동진·김상훈

최은석 · 김기웅 · 김종양

이인선 · 김예지 · 권영세

이헌승 · 김재섭 · 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

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을 산 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 58조제3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56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 이경우 「산림보호법」 제10조의5의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징수액에 한정한다.

제58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림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시행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58조(녹색자금) ①・② (생 략) | 제58조(녹색자금) ①・② (현행과 | | |
| | 같음) | | |
|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 | ③ | | |
| 원으로 조성한다.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 | | |
| | 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 | |
| | 액. 이 경우 「산림보호법」 | | |
| | 제10조의5의 산림 공익가치 | | |
| | 보전 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징 | | |
| | 수액에 한정한다. | | |
|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 | 4 | | |
| 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 | | |
|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 | | |
| 할 수 있다.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2. 「산림보호법」 제10조의5에 | | |
| | <u>따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u> | | |
| | 제도 시행에 관한 사업 | | |
| <u>2.</u> ~ <u>9.</u> (생 략) | <u>3.</u> ~ <u>10.</u> (현행 제2호~제9호와 | | |
| | 같음) | | |